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1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주호영·권영세·곽규택

김승수 · 장동혁 · 이헌승

김종양 • 구자근 • 신동욱

정희용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 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.

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어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권리의 보호) ① 급여를	제40조(권리의 보호) ①
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	
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	
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
	채권이 있어 연금인 급여를
	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